

검토 보고서

2026. 4. 21.(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병준 의원외 5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고병준 의원 외 5명
- 제안일: 2026. 4. 10.
- 회부일: 2026. 4. 15. (의안번호 : 26-56)

2.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마.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사.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별표1(시각장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및 제4조(책무)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4. 6. ~ 4. 10.(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임.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 안 제5조에서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는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및 종로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의 제공 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및 지역 내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2026년 1월 기준 마포구 등록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1,399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약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구에서 주관하는 신년행사 당시 구체적인 현장해설이 필요했다는 시각장애인의 민원이 있었으며 마포구는 구 행사 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역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조례안에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해설 제공기준과 전문인력의 자격 및 활동기준은 상위법 범위내에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복지과	김희선 (8880)	이승익 (16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한다.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김소리
연 락 처	02-3153-8875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건(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의사소통을 위해 구어(口語)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다소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말(구어)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체계
- 보완적(Augmentative) 방법과 대체적(Alternative) 방법으로 나뉨
 - * 보완적 방법 : 기존의 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
 - * 대체적 방법 :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방식

2. 관내 장애인 현황

2026. 2 현재 / 명

등급	장애인수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뇌병변	기타
심한 장애	4,596	935	317	372	1,206	667	1,099
심하지 않은 장애	7,535	3,851	1,082	1,556	-	562	484
계	12,131	4,786	1,399	1,928	1,206	1,229	1,583

3. 서울시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명	법령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9. 29.
2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9. 26.
3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9. 25.
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8. 1.
5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	2025. 6. 26.
6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	2025. 3. 12.
7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11. 19.
8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12. 18.
9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1. 3.
1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9. 26.
1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5. 11.
12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30.
13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	2022. 2. 24.
14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7. 20.